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02 _ 2011년 5월



맨발의 '기봉이'를 위하여

〈맨발의 기봉이〉(2006년)는 좋은 영화입니다. 실화여서 감동이 더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주인공 엄기봉씨는 효성이 지극한 지적장애인입니다. 올해 47살이니 개봉 당시는 42살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목이 〈맨발의 '기봉이'〉입니다. 중년 남성을 '기봉이'라고 부릅니다. 엄기봉씨는 영화 덕분에 유명해졌지만, 동시에 그 영화 탓에 어린 아이처럼 불립니다. 애나 어른이나 '기봉이'라고 불러야 자연스럽지 '기봉씨'라고 부르면 어색해 보일 지경입니다. 우리 이웃에서 살고 있는 14만명의 '기봉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영원한 어린 아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봉씨"로 불리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CONTENTS

02	장애와 이미지	
04	편집자 편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05	센터는 지금...	조례제개정운동본부 출범식 경남장애인인권포럼 토론회
10	이 사람의 향기	이상호 서울시의원 -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15	포커스 I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대구지역 중심)
22	포커스 II	장애여성출산지원조례 현황
28	포커스 III	2010년 지방예산모니터링 결과
34	포커스 IV	모범음식점 - 서울시 영등포구, 중구
40	서평	불편해도 괜찮아
42	Cinema	작은 신의 아이들
44	장애 이슈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모니터링 리포트〉 창간호를 발간하고 나서 경향 각지에서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지면을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식지를 내기로 결정해 놓고도 내심 걱정했습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알차게 지면을 채울 수 있을지, 행여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거나 없을지, 또 지속가능한 소식지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 등등,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창간호를 내놓고 보니, 어디까지나 자평입니다만, 내용도 비교적 알차고 주변의 반응도 좋아 우리 센터 활동가들의 마음이 다소나마 가벼워졌습니다.

이번 호 ‘포커스’에서는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문제, 장애여성출산지원조례 현황, 2010년 지방예산모니터링 결과, 모범음식점 접근성 실태 등을 다루었습니다. 한 동안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큰 이슈였습니다. 이 문제는 어쩌면 영원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이동권 이슈가 다소 관심사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횡단보도 문제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모범음식점 접근성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었습니다. 지방예산모니터링은 우리 센터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지자체의 장애인 예산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요약해서 실었습니다. 지방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특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장애여성출산지원조례 현황 및 비교 분석 자료도 지방의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번호에서 신설된 ‘인터뷰’ 코너에는 이상호 서울시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금 장애인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장애인들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창간호에 보내주신 격려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독자들의 격려와 지지에 부끄럽지 않는 〈모니터링 리포트〉가 되도록 매호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다음호에서 뵙겠습니다.

2011년 5월 25일 윤 삼 호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출범식 열려

- 전국 6개 지역과 94개 기관이 연대하여 전국단위의 조례제·개정 추진키로

글. 김의수 / 센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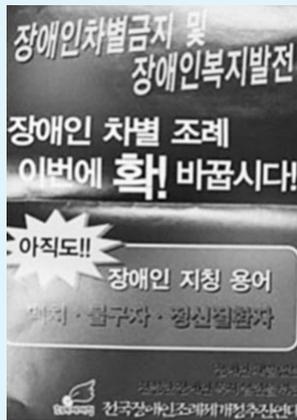
▲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출범식에서 격려연설을 하고 있는 이범재 공동집행위원장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이하 “조례연대”)가 4월19일 서울시의회 별관 대강당에서 정식 출범하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제주 등 6개 지역추진연대 관계자들, 장애인권 활동가들, 고만규·이상호 서울시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이범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인사말에서 “장애인 관련 조례 제개정운동은 한국 장애인운동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만규 서울시의원은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례제개정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호 서울시의원도 “지금까지 조례제개정운동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례연대가 출범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하 “인권포럼”)은 2009년에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16개 광역시도 자치법규 모니터링을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한국 장애인개발원에 장애차별적 법률 조항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여, 올초 그 결과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였다. 2010년에 해당 지자체에 차별적 조례들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는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도 공청회 결과를 포함하여 다시 해당 지자체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10년부터 자치법규모니터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3년간 총 3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사회 자치법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장애인인권 모니터링 및 조례 제·개정운동”을 진행 중이다. 모금회 2년차 사업시행년도부터는 개선요청이라는 소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조례 제·개정이라는 적극적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연대가 출범한



▲ 조례제개정 홍보전단지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의 성과라면 각 지자체별로 차별적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고, 서울조례연대의 정식 출범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우선 모니터링 성과로는 2010년 8월 전국 244곳 지자체 자치법규 총 91,131건 가운데 811건의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선별하여 그 현황을 발표하였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16개 광역시도 자치법규 8,712건을 전수 검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총 146건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차별적 조항임을 확인하고, 개정안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그 결과, 2010년 11월 2일 현재 통보한 개정안 가운데 31건이 개선됐다(개선율 21%).

또 지난 해 5월에는 서울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집행위원장 이권희)가 결성되어 서울시내 구정장들로부터 장애차별적 조례 개정 및 장애인 관련 조례의 제정을 약속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례연대 출범은 조례 제정 및 개정 사업이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즉, 광역시도에 국한했던 모니터링사업을 전국의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고, 아울러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제개정운동을 펼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하여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 등 4개 광역시도에 지역추진연대가 이미 구성되었고, 경기도와 대전시는 연대기구를 준비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 장애위원회,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법·행정학 학계 전문가 등 각계 기관 및 전문가들도 조례제개정운동에 함께하기로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94개 단체 및 정당이 이 운동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앞으로 조례연대는 2012년까지 전국 244개 지자체 자치법규 91,131건 모두를 전수조사해 장애차별적 조항을 개정하고 장애인 관련 조례를 확대하는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연대가 선정한 '10대 장애인 조례 제정을 위한 전국순회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조례연대는 19일 출범식 행사를 마친 뒤 서울시의회에서 청계광장까지 행진하면서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장애인 비하 표현 및 장애인 입장제한 조항, 정신장애인 차별 조항, 장애인 고용제한 조항 등 장애차별적 조항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출범식 뒤 청계광장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회원들 ▶

경남 장애인복지예산 및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경남 15개 장애인 단체와 150여명 참석하여 열띤 토론 진행

경남장애인인권포럼은 2011년 4월 15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0년 경남 장애인복지예산 및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남 지역 15개 장애인단체와 150여명의 장애인들, 그리고 도의원들과 경남도청 복지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토론회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 장애인 정책과 예산 편성을 분석하여 경남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시사점을 함께 고민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경남장애인인권포럼이 기획하였다.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장애인 복지예산·정책 분석을 토대로 한 토론회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참석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았다.

토론에 앞서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는 김춘수 보건복지국장이 대신 읽은 축사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재할과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장애인 복지정책 모니터링을 통하여 경남도 장애인 복지시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하는 경남장애인인권포럼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봅니다”라고 밝혔다. 또 주최 측을 대표해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 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모니터링 사업 전반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경남 지역에 특화된 자료를 계속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감정기 교수가 맡았다. 감 교수는 예산 분석뿐만 아니라



집행과정과 결산내역에 대한 분석도 병행될 필요가 있고, 낭비요인 파악, 당초예산의 적절성 평가 등을 위해서 상시적인 예산 감시 및 모니터링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강성훈 경상남도 의원은 예산의 지방이양 문제점과 경남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경남도청 공무원들에게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이지수 연구원은 경상남도와 경기도 도시 각 3곳의 예산과 정책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우리시민복지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예산 총액은 정해져 있으므로 숨어있는 불필요한 사업을 찾아내 장애인 예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며 예산감시운동에서 예산 참여 운동을 강조 하였다.

최연림 경남도청 복지과장은 2011년 장애인 복지 정책의 목표 및 이행 과제를 브리핑하고, 장애인 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한 김은정 경남DPI 사무처장은 경남의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와 지정 토론이 끝나자마자 청중석에서 많은 질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증 장애인들은 경남도청이 지원하는 ‘도우미뱅크’가 5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 가는 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도우미뱅크’ 사업이 현행 활동보조사업과 겹치는데도 경상남도가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여기에 대해 감정기 교수와 최연림 과장은 ‘도우미뱅크’는 경남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의 불만을 샀다.

육교 대신 횡단보도를 만들자!

- 대구시 사례를 중심으로

글. 강인영 / 센터 연구원

차량요일제 운영, 교통유발금 인상, 주차장 유료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슈인데 아직도 시민들에게는 차를 위한 도로정책, 차를 위한 정책만 있지 보행권 확보에 대한 정책이 없다. 그래서 반월당의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횡단보도 설치 문제, 이게 아직 장애인단체나 이해 관계자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메트로센터의 상권도 물론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이동편의증진조례와 관련된 보행권 조례와 관련된 대구시의 교통수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의 정책을 하나만 따로 놓게 하지 마시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연동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대구시의원(한나라당), 대구광역시의회 166회 경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2008. 2. 21) 회의록 중에서)

누구를 위한 육교인가? - 보행자 vs. 자동차

김충환 의원의 말대로 '자동차의 권리'를 위한 도로정책은 넘쳐나지만, 정작 '보행자의 권리'를 위한 도로정책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특히 육교 설치하는 자동차를 위한 도로정책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육교는 자동차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는 대신 보행자가 자동차를 피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길을 건너도록

하는 구조물이다. 횡단보도와는 정반대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도육교’는 서울의 인구 과밀 현상과 이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육교의 수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를 보면, 1998년 395개이던 육교가 2000년 1,121개, 2009년 1429개 로 급증하였다. (<부록> 참고)



▲ 68억짜리 불당육교(위)와 42억짜리 경관육교(아래)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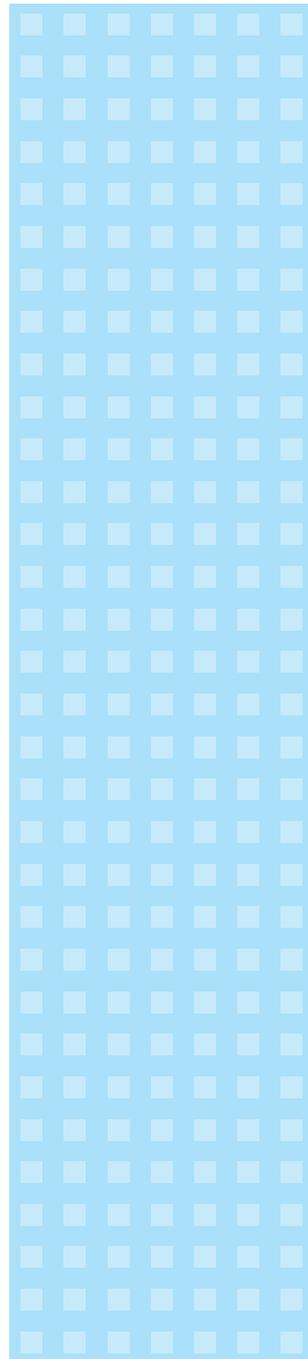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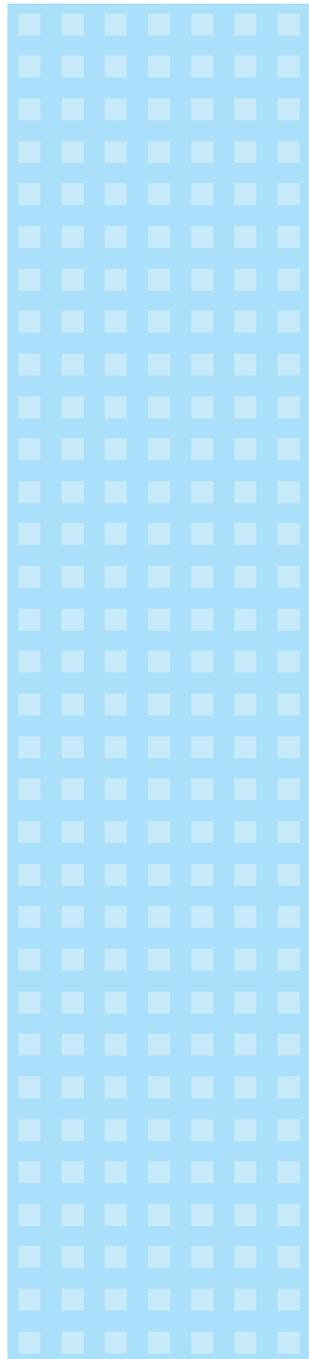
육교는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설계된 시설이다 보니 ‘보행자의 상황’ 즉,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뿐 아니라 일반시민의 통행 불편은 애당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 결과, 불편한 육교를 이용하는 대신 위험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고, 이 때문에 육교 부근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육교 설치와 유지에 드는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다. 육교 하나를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은 12억~15억 원 정도이고 도색, 수리 등 유지 비용만도 연간 수 천만 원이 소요된다.

가령, 충남 천안시의 68억짜리 ‘불당육교’와 수원시의 42억짜리 ‘경관육교’는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역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1970년대부터 육교 설치가 급증했다면 이제 시설 노후화로 인한 비용을 걱정해야 할 때이다. 이에 반해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8천만 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육교의 이용률은 어떨까? 조사 결과, 경기도 수원시에 설치된 31개 육교 중 시간당 이용자가 30명 이하인 육교가 7곳이었는데, 심지어 시간당 이용자가 2.8명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그나마 제구실을 하는 육교는 두 곳에 불



과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육교는 과연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시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시민들이 별로 이용도 하지 않는 육교를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까닭은, 첫째 지자체들이 자동차를 우선하는 과거의 관행에 여전히 매여 있고, 둘째 보행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셋째 도로행정을 시행하기에 앞서 주민들과의 ‘협치’(governance)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자! - 대구시의 경우

대구시는 2005년부터 횡단보도 설치 문제가 지역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대구시가 반월당 지하상가를 개발하면서 인근 횡단보도를 모두 없애자 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부터였다. 결국 대구시는 폐쇄한 횡단보도 6곳 가운데 4곳을 원상복구하였다.

그 뒤 이들 단체는 ‘대구보행권연대’를 결성하여 동구 신암육교 철거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보행권 확보 운동의 여파로, 2008년 대구시 서구청은 3개의 육교(서구새길시장 육교, 서부시장 육교, 평리육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였고, 동구 강촌육교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다. 또한 대구시는 2009년부터 내구연한이 다 된 육교 5~10개소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보행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단체 대표, 경찰청 담당자, 교수,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보행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해 4월 20일 첫 활동을 시작하였다.



▲ 육교가 철거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서구 새길시장 앞
(영남일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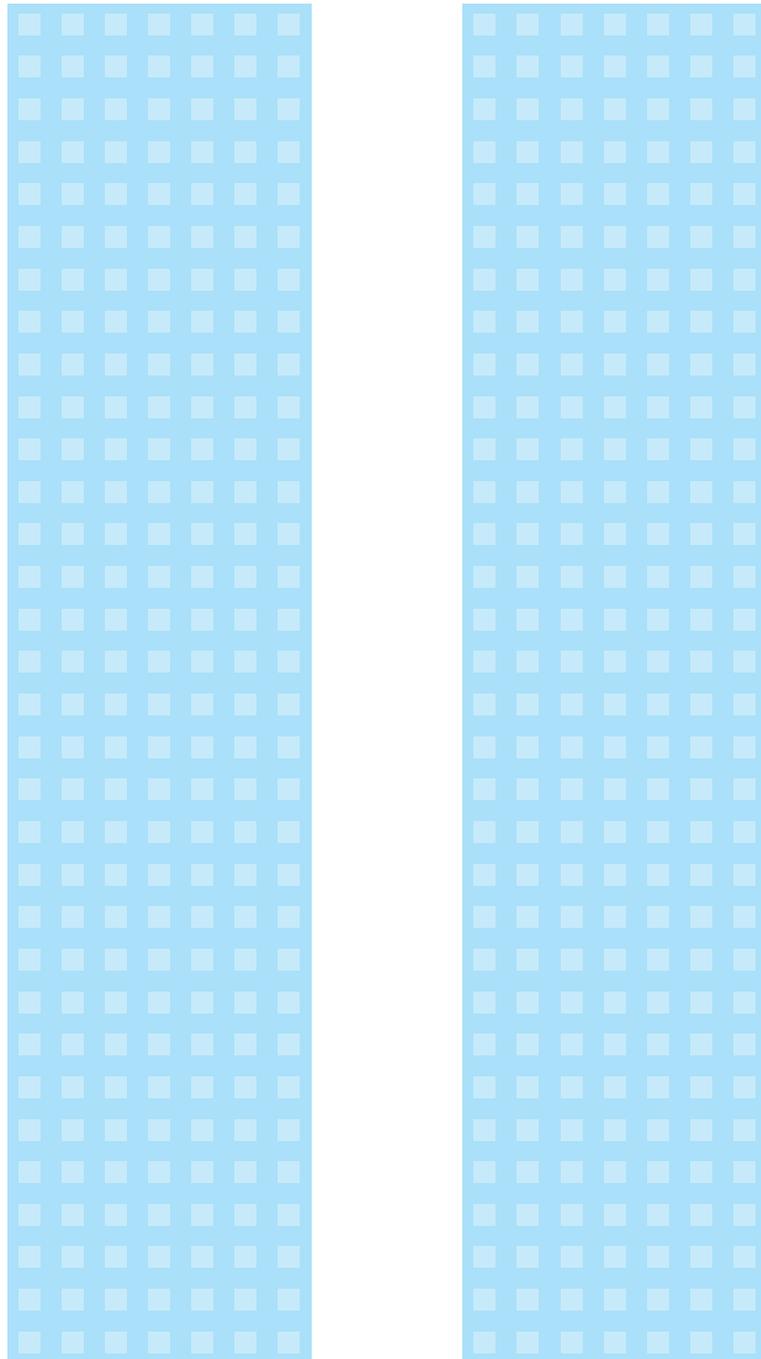
▲ 동구 방촌동 강촌육교 육교 편의시설
(영남일보 제공)

뿐만 아니라 '대구보행권연대'는 대구시 도심에 위치한 한일극장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몇 년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결국, 대구시는 시민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지하상가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일극장 앞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겠다고 시장이 직접 약속했다.

대구시의회도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두고 나섰다. 예를 들면, 2008년 김의식 대구시의원은 대구지역에 설치된 육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재까지 설치된 육교 대부분은 교통약자와 일반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더러 나아가 지역 상권과 주변 재래시장을 위축시키므로 단계적으로 육교를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

대구시내 54곳에 분산 설치된 육교문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1973년 신암 육교와 대현 육교를 시작으로 새로운 육교시대의 막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교통 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작된 이 사업은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단절은 물론 지역 상권과 주변 재래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또한 대형 인명사고의 현장에는 반드시 육교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듯이 대구시내 도로 상에서 가장 먼저 정비되어야 할 대상이 육교 철거란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교통소통위주의 전근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보행자 중심의 체계로 그 대응책을 마련, 차량, 시설물 등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막고 더 나은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교통 기본계획을 재구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민의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시작하여 단계적 육교철거를 실시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걷기에 편안한 환경으로 도로를 개선하는 것만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교통 약자에게 배려되는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은 시민 대다수에게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선진교통환경이 될 것입니다. (김의식 대구시의원(한나라당), 대구광역시의회 170회 본회의 제3차(2008. 6. 27)



횡단보도 설치와 보행권 확보 운동의 확산

2005년 정부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였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 이 법은 3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는 지하도와 육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제정과 시행을 전·후로 교통약자들은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구시에서는 '보행권연대'가 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2010년 장애인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중구지역이동약자권리확보를위한시민연대'가 결성되었다.



▲ 서울시 중구지역 이동약자 권리 확보를 위한 시민연대 활동 모습(2010. 06. 30.)

이러한 운동에 힘입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의 권리를 확보하고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 서울광장, 2006년 영등포, 2009년 회현지하상가 도로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서울시에서도 지하상가 상인들의 횡단보도 설치 반대가 극심했다. 급기야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구청 공무원과 설치를 반대하는 지하상가 상인들 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자치구 입장은 단호하다. 보행권은 도시의 모든 구성원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며, 지하상가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도 2008년 중구 남포동 피프(PIFF)광장과 자갈치시장을 연결하는 왕복 8차로 간선도로에 횡단보도가 개통됐다. 이곳 또한 지하상가 상인들이 횡단보도 설치에 반대해 들고 있어났으나 결국 복원 쪽에 힘이 실렸다. 특히 부산시는 철거가 필요한 육교를 대부분 철거했고(2005년부터 64곳 철거, 2010년 현재 152곳 남음), 지역주민이나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보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육교는 앞으로도 계속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에서는 중앙로 횡단보도가 17년 만에 부활했다. 600여 지하상가 상인들의 집단 반발 속에서도 2007년부터 2년에 걸쳐 횡단보도 3개가 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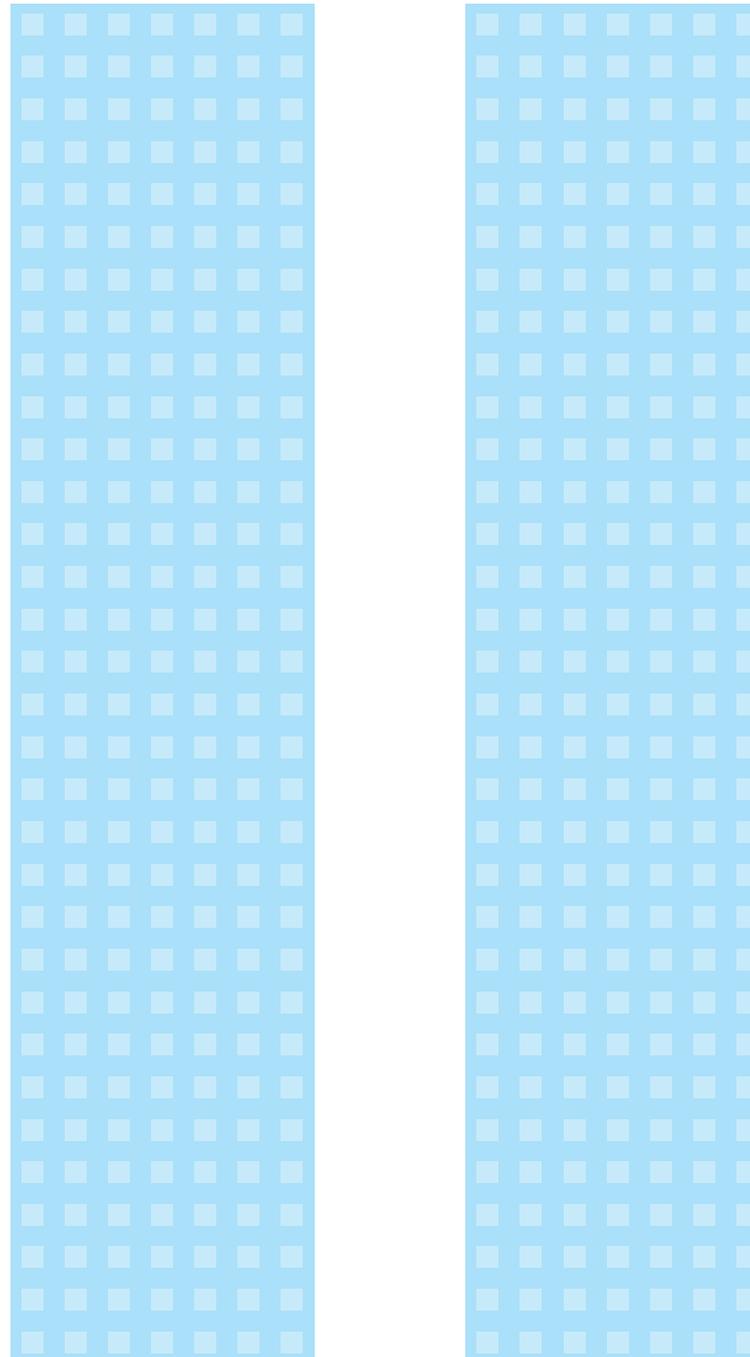
광주시 동구 충장로 3가와 4가를 잇는 횡단보도도 폐지된 지 20여년 만인 2000년 다시 설치됐다. 지하상가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였으나, 결국 시는 시민 여론에 힘입어 설치를 관철시켰다.

호화 육교 설치로 곤욕을 치렀던 경기도 수원시는 육교나 지하보도의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타당성 조사와 설계의 경제성 조사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교통약자 보행권 보장은 모든 시민의 편의를 보장하는 것!!

아직 미약한 수준이지만, 시민의 이동편의 즉 보행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광역시의 사례는 좋은 시사가 된다. '보행자의 권리'에 대한 민·관의 공통된 문제의식 그리고 민·관·각계 전문가 등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 낸 '협치'의 구조와 이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다른 도시에 비해 선전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행정을 지향하면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보행자를 우선하는 인간 중심의 미래형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말이 있다. 도로 위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이 격언에 안성맞춤이다.



〈부록〉 16개 시도 육교 설치 현황

(2009. 12. 31 현재)

시·도	전체	기초지자체별 육교 수
서울	187	강남구(9) 강동구(8) 강북구(3) 강서구(7) 관악구(9) 광진구(3) 구로구(10) 금천구(6) 노원구(7) 도봉구(1) 동대문구(12) 동작구(11) 마포구(2) 서대문구(10) 서초구(12) 성동구(3) 성북구(5) 송파구(6) 양천구(16) 영등포구(11) 용산구(18) 은평구(1) 종로구(4) 중구(3) 중랑구(10)
부산	152	강서구(1) 금정구(8) 기장군(13) 남구(7) 동구(7) 동래구(14) 부산진구(21) 북구(14) 사상구(20) 사하구(12) 서구(7) 수영구(6) 연제구(2) 영도구(1) 중구(3) 해운대구(16)
대구	52	남구(2) 달서구(7) 달성군(5) 동구(12) 북구(12) 서구(5) 수성구(7) 중구(2)
인천	62	강화군(0) 계양구(3) 남구(8) 남동구(13) 동구(1) 부평구(11) 서구(13) 연수구(4) 옹진군(0) 중구(9)
광주	79	광산구(25) 남구(9) 동구(8) 북구(20) 서구(17)
대전	45	대덕구(8) 동구(6) 서구(21) 수성구(7) 중구(2)
울산	22	남구(5) 동구(3) 북구(3) 울주군(5) 중구(6)
경기	389	가평군(2) 고양시(40) 과천시(0) 광명시(5) 광주시(6) 구리시(3) 군포시(11) 김포시(11) 남양주시(9) 동두천시(0) 부천시(15) 성남시(20) 수원시(29) 시흥시(11) 안산시(29) 안성시(5) 안양시(34) 양주시(3) 양평군(2) 여주군(5) 연천군(1) 오산시(12) 용인시(30) 의왕시(10) 의정부시(6) 이천시(13) 파주시(9) 평택시(24) 포천시(0) 하남시(9) 화성시(35)
강원	51	강릉시(4) 고성군(8) 동해시(3) 삼척시(4) 속초시(0) 양구군(0) 양양군(5) 영월군(1) 원주시(10) 인제군(1) 정선군(0) 철원군(0) 춘천시(5) 태백시(2) 평창군(0) 홍천군(4) 화천군(1) 횡성군(3)
충북	29	괴산군(0) 단양군(2) 보은군(1) 영동군(0) 옥천군(1) 음성군(3) 제천시(0) 증평군(0) 진천군(1) 청원군(5) 청주시(7) 충주시(9)
충남	63	계룡시(1) 공주시(3) 금산군(0) 논산시(2) 당진군(6) 보령시(0) 부여군(4) 서산시(4) 서천군(1) 아산시(13) 연기군(6) 예산군(6) 천안시(16) 청양군(1) 태안군(0) 홍성군(3)
전북	35	고창군(2) 군산시(6) 김제시(6) 남원시(1) 무주군(0) 부안군(0) 순창군(0) 완주군(7) 익산시(5) 임실군(0) 장수군(0) 전주시(8) 정읍시(0) 진안군(0)
전남	124	강진군(4) 고흥군(5) 곡성군(3) 광양시(10) 구례군(4) 나주시(10) 담양군(4) 목포시(10) 무안군(5) 보성군(5) 순천시(16) 신안군(5) 여수시(10) 영광군(5) 영암군(5) 완도군(5) 장성군(5) 장흥군(5) 진도군(4) 함평군(5) 해남군(5) 화순군(5)
경북	59	경산시(3) 경주시(9) 고령군(0) 구미시(14) 군위군(0) 김천시(4) 문경시(0) 봉화군(0) 상주시(0) 성주군(1) 안동시(2) 영덕군(2) 영양군(1) 영주시(4) 영천시(5) 예천군(1) 울릉군(0) 울진군(0) 의성군(0) 청도군(2) 청송군(0) 칠곡군(4) 포항시(7)
경남	80	거제시(5) 거창군(0) 고성군(1) 김해시(6) 남해군(0) 밀양시(1) 사천시(1) 산청군(0) 양산시(20) 의령군(1) 진주시(6) 청령군(0) 창원시(34) 통영시(2) 하동군(1) 함안군(1) 함양군(0) 합천군(1)
제주	1,429	없음

* 출처 : 각 지자체 2010년 통계연보 자료

장애인출산지원금지원조례 현황과 과제

글. 김익수 / 센터 연구원

조례는 예산집행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지 않아 그 효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 대상과 지원금의 규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시행 목적을 뚜렷하게 하는 조례도 있다. “장애인가정(여성) 출산 지원금 지원조례”(이하 ‘출산조례’)가 그렇다.



▲ 다큐멘터리 영화 <진옥언니, 학교 가다>의 한 장면. 뇌성마비인 김진옥씨가 딸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외출을 하고 있다.

장애 여성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 출산, 육아에서 신체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임신을 한 장애 여성은 신체의 손상 때문에 비장애 여성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은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도 든다. 하지만

만 장애인 가정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충분한 육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자체들이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육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와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런 조례가 아무데도 없고 제정을 하려고 해도 예산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차선책으로 출산지원금 조례라도 만들어 장애인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출산조례의 특성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7곳에서 ‘장애여성’ 또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2010. 6. 30 현재)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된 것은 2006년 12월 26일 충남 천안시장이 발의하여 통과된 ‘천안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다. 천안시 입법에 영향을 받아 충청남도도 2009년 4월 15일에 「충청남도여성장애인출산및영아양육지원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 조례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장애여성(가정) 출산 지원 조례이다.

37곳 가운데 26곳은 ‘장애여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11곳은 ‘장애인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경기 안산시, 의왕시, 전북 군산시, 부산 사상구 등은 신생아의 아버지가 장애인인 가정에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머니이든 아버지이든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육아에서 남녀평등을 인정하는 진보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22일에 제정된 ‘부산시 사상구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조례’도 장애를 가진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출산지원금액은 100만원 내외가 가장 많지만, 최소 30만 원(‘부’가 장애등급 3~4급인 경우)부터 최대 300만 원(인천광역시 남구, 여성장애인 장애등급 1~2급)까지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다자녀출산장려지원조례’ 같은 다른 법규에 의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여성(가정) 출산 지원금을 이중으로 지급받는 게 가능한 지자체가 더 많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중지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출산지원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장애여성(가정)으로 제한하는 경우보다 자산과 무관하게 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각급 지자체들은 한 차례 출산지원금만 지급하고 장애인 가정의 육아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산 이후 육아 과정에서도 장애인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산후도우미' 파견,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전골발육부전증'이라는 희귀병 때문에 허반신이 없이 태어난 미국인 로즈마리 시긴스(37세)가 아들, 딸과 함께 공원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좋은' 출산지원조례를 만들려면

장애 '여성' 지원조례 No! — 장애 '가정' 지원조례 Yes!

출산지원조례 37건 가운데 장애 '여성' 지원조례와 장애 '가정' 지원조례가 7:3 정도 된다. 즉, 아버지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이다. 우리 사회가 이미 오래 전부터 남녀평등, 특히 가사노동과 양육을 부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법적, 관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조항은 시대에 맞지 않고 남녀 역차별의 소지마저도 있다. 따라서 향후 제정되는 출산지원조례는 장애 '여성' 지원조례가 아니라 장애 '가정' 지원조례로 발의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조례 No! — 등록장애인 지원조례 Yes!

출산지원조례 대부분은 특별한 자산조사 없이 해당 지자체에 일정기간(6개월~12개월) 거주한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들만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출산지원은 '장애로 인한' 출산 및 양육의 어려움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이므로 자산의 많고 적음

이 지급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기왕에 지급대상을 제한한 조례들은 서둘러 개정할 필요가 있고, 향후 새로 제정될 조례에서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중복지원 불가 No! — 중복지원 가능 Yes!

기존의 일반 출산지원조례와 장애여성(가정) 출산지원조례 둘 다 있을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자체가 더러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다시피 장애여성(가정) 출산지원조례는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나 고통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출산지원조례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출산지원조례 Yes! —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 Absolutely Yes!

물론 출산지원조례만 있어도 장애인 부모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양육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비장애인 부모가 장애 아이를 양육하면 한 달에 수십만원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데, 장애인 부모가 비장애 아이를 양육하면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것은 어딘가 불공평해 보인다. 따라서 출산지원조례를 계속 제정하는 한편, 여건이 되는 지역의 지방의회라면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출산지원금 조례 제정 현황

(2010년 6월 30일 기준)

	조례명(제정일)	지원 금액
서울	관악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09.6.8)	100만원(1급, 2급의 경우 120만원)
	동대문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09.4.30)	1~2급 150만원 ↓, 3~4급 100만원 ↓, 5~6급 70만원 ↓
	서대문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09.4.7)	1~2급 120만원, 3~4급 70만원, 5~6급 50만원(중복지원 불가능)
	용산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09.5.8)	1~2급 100만원, 3~4급 70만원, 5~6급 50만원(중복지원 불가능)
	중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08.11.25)	1~2급 150만원, 3~4급 100만원, 장애5~6급 70만원(중복지원 가능)

	조례명(제정일)	지원 금액
인천	남구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지급조례(09.11.23)	1~2급 300만원 ↓, 3~4급 200만원 ↓, 5급 100만원 ↓, 6급 50만원 ↓ (중복지원 가능)
	부평구장애인가정출산 지원금지급조례(07.10.05)	'모'가 장애인 1~3급 100만원 ↓, 4~5급 70만원 ↓, '부'가 장애인 1~2급 70만원 ↓, 3~4급 30만원 ↓
광주	서구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지급조례(10.3.17)	1~2급 100만원, 3~4급 70만원, 5~6급 5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중복지원 가능)
울산	울주군장애인가정출산 지원금지급조례(09.2.26)	1~2급 100만원 ↓, 3~4급 80만원 ↓, 5~6급 60만원 ↓
경기	과천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에관한조례(10.2.12)	1~3급 100만원 ↓, 4급~6급 70만원 ↓ (건강검진비용 30만원 ↓)
	광명시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지급조례(07.8.13)	100만원 ↓
	김포시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지급조례(07.6.27)	100만원 ↓
	남양주시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지급조례(08.3.27)	1~2급 150만원, 기타 100만원
	성남시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지급조례(08.3.14)	100만원 ↓ (중복지원 불가능)
	수원시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지급조례(07.12.27)	100만원 ↓
	안산시장애인가정출산 지원금지급조례(08.12.3)	1~3급 100만원 ↓, 4~6급 70만원 ↓
	안성시장장애인출산 지원금지급조례(08.5.1)	중증 150만원, 기타 100만원
	안양시장장애인가정출산 지원금지급조례(09.8.11)	1~3급 100만원 ↓, 4~6급 70만원 ↓
	오산시장애인가정출산 지원금지급조례(08.4.11)	'모'가 장애인 1~3급 100만원 ↓, 4~5급 70만원 ↓, '부'가 장애인 1~2급 70만원 ↓, 3~4급 30만원 ↓ (중복지원불가)
	의왕시장장애인가정출산 지원금지급조례(08.2.28)	'모'가 장애인 1~3급 100만원 ↓, 4~5급 70만원 ↓, '부'가 장애인 1~2급 70만원 ↓, 3~4급 30만원 ↓
	의정부시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지급조례(08.5.2)	100만원

	조례명(제정일)	지원 금액
경기	파주시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지급조례(07.6.1)	100만원 ↓
	화성시장장애인가정출산 지원금지급조례(08.8.1)	100만원
충북	보은군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지급조례(08.12.12)	100만원
	증평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8.10.31)	100만원 (중복지원 불가능)
	청주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8.11.28)	1~2급 150만원, 3~4급 100만원, 5~6급 70만원
충남	충남여성장애인출산 및 영아양육지원조례(09.4.15)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지급 금액 결정
	천안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6.12.26)	100만원
전북	군산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급조례(08.11.17)	'모'가 장애인 1~2급 150만원 ↓, 3~4급 100만원 ↓, 5~6급 70만원 ↓, '부'가 장애인 1~2급 100만원 ↓, 3~4급 70만원 ↓ (중복지원 불가능)
	김제시장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급조례(09.8.5)	'모'가 장애인 1~2급 150만원 ↓, 3~4급 100만원 ↓, 5~6급 70만원 ↓, '부'가 장애인 1~2급 100만원 ↓, 3~4급 70만원 ↓ (중복지원 불가능)
	완주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8.7.29)	1~3급 100만원, 4~6급 70만원
	임실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8.11.4)	100만원
	전주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8.6.13)	1~2급 150만원, 3~4급 100만원, 5~6급 70만원(중복지원 불가능)
	전남	순천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9.9.28)
목포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9.6.1)		1~2급 100만원, 3~4급 70만원, 5~6급 50만원(중복지원 가능)
경북	구미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9.6.9)	1~2급 150만원, 3~4급 100만원, 5~6급 70만원
	영주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09.11.19)	1~2급 150만원, 3~4급 100만원, 5~6급 70만원(중복지원 가능)

* "중복지원 가능" - 다른 조례에 의한 출산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 "중복지원 불가능" - 다른 조례에 의한 출산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능

2010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예산 분석

- 인권포럼, 최초로 전국 지자체 장애인 예산 총량 공개

글. 현근식 / 센터 연구위원

장애인 예산의 개념

‘성인지 예산’ 개념은 정부 차원에서 정립되었지만, ‘장애인 예산’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 예산을 주로 사회복지예산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장애인 예산의 모든 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예산은 노동, 건설, 체육, 문화, 여성 등 전 부처에 관련 예산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장애인복지 예산을 포함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모든 부서의 장애인 관련 예산을 모두 합친 것을 ‘장애인 예산’이라고 개념 규정한다.

우리는 장애인 예산의 개념과 범주를 아래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표1>장애인 예산의 개념과 범주

예산 종류	성격별 예산 종류	내 용
장애정책예산	장애 특정적 예산	장애인을 위한 예산
	장애 형평적 예산	공익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우대조치나 장애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예산
주류정책예산	일반(주류) 예산	위 두 가지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예산

여기서 ‘장애 특정적 예산’이란 명백하게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고, ‘장애 형평적 예산’은 적극적 우대조치나 장애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자체 예산 가운데 장애인이라고 명백하게 분리통계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만을 포함시켰다.

전국 지자체 장애인 예산 총량 = 2조 4710억

장애인 예산 총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우리 센터가 조사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순계 장애인 예산(광역단체 예산과 기초단체 예산 가운데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예산)을 모두 합하면 약 2조 4710억이다. 이 금액이 현재 246곳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해 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순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장애인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인가?

장애인 예산 총액은 경기도(약 5,076억), 서울시(약4,010억원), 경상남도(약1,880억), 경상북도(약1,690억), 부산시(약1,416억원) 순이었다.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가 약7만 명 정도 더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경기도의 예산 총액이 수도 서울보다 많다는 것은 특이할만한 점이다.

한편, 장애인 예산이 지역은 울산시(약496억), 제주특별자치도(약535억), 광주시(783억원), 대전시(969억) 순이었다. 여기서는 장애인 인구수가 훨씬 더 많은 울산시 장애인 예산보다 제

<표2> 지역별 순계 장애인 예산 총액
(단위: 명, 천원)

지자체명	장애인 인구	광역+기초총합 순계장애인예산
서울	402,859	409,709,918
부산	168,143	141,603,417
대구	113,610	102,651,590
인천	127,122	112,153,662
광주	65,796	78,317,554
대전	68,571	96,874,692
울산	47,253	46,909,227
경기	475,732	507,613,375
강원	96,511	98,694,139
충북	90,695	99,912,810
충남	124,296	129,227,953
전북	129,753	119,673,801
전남	143,253	117,152,710
경북	162,276	169,016,935
경남	173,639	187,988,578
제주	29,935	53,529,847
총계	2,419,444	2,471,030,208

주도의 장애인 예산이 70억원 이상 더 많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그 이유는 제주도의 경우 기초지자체가 없는 특별자치도여서 예산이 순전히 도예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다 다른 시도에 비해 장애인 정책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눈에 띄는 것은 광주시와 대전시의 예산 차이다. <표 2>에서 보듯이 이 두 도시는 장애인 인구가 비슷한데도 대전시의 장애인 예산이 약180억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1인당 장애인 예산

장애인은 어느 곳에 사는 게 유리한가?

지역별 1인당 장애인 예산은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균적인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서 장애인 예산 총액 비교와는 다른 함의를 가진다. 부연하자면, 1인당 장애인 예산이 높은 지역의 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보다 복지 수혜의 양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순계 총액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1인당 장애인 예산은 평균 102만원 정도다. 장애인 예산 총액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가장 높지

<표3> 지역별 1인당 장애인 예산
(단위: 명, 원)

지자체명	장애인 인구	1인당 순계 장애인예산
서울	402,859	1,017,006
부산	168,143	842,161
대구	113,610	903,544
인천	127,122	882,252
광주	65,796	1,190,309
대전	68,571	1,412,765
울산	47,253	992,725
경기	475,732	1,067,015
강원	96,511	1,022,621
충북	90,695	1,101,635
충남	124,296	1,039,679
전북	129,753	922,320
전남	143,253	817,803
경북	162,276	1,041,540
경남	173,639	1,082,640
제주	29,935	1,788,203
평균		1,021,322

만, 1인당 장애인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결과가 사뭇 다르다. 제주도와 대전시가 가장 높았다. 제주도의 1인당 장애인 예산은 약179만원이다. 제주도가 이처럼 1인당 예산이 압도적으로 높은 까닭은, 무엇보다 기초지자체가 없어 장애인 예산이 100% 도 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정책 사업의 수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시도는 약80만원에서 약140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대전시가 약141만원으로 높은 수준이고, 전남이 가장 낮은 약82만 원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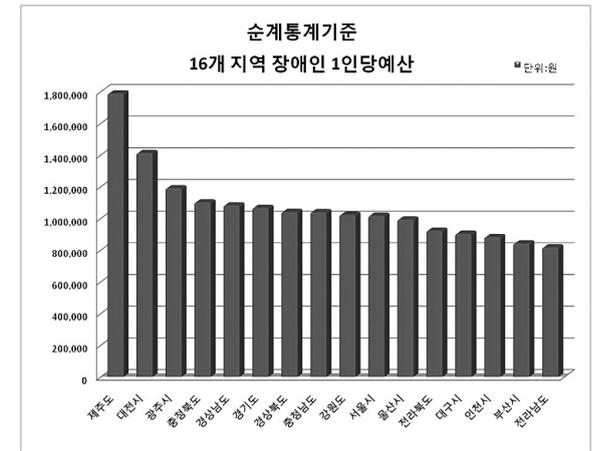
광역시만 비교하면 대체로 장애인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1인당 장애인 예산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을 보면 3대 광역시인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의 1인당 장애인 예산이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광역 자치도의 경우는 전남과 전북의 1인당 장애인 예산이 100만원 미만이고 나머지 도는 고르게 100만원~11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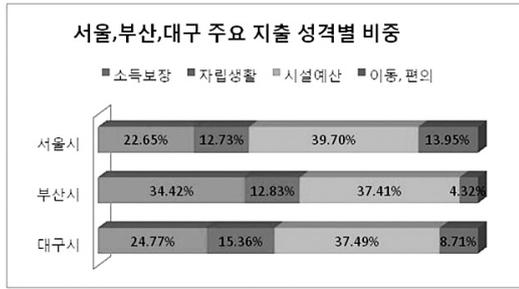
예산 지출 성격별 분류

소득보장과 장애인 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다.

장애인 예산의 지출 성격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장애인 시설과 소득보장 예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의 장애인 예산



<그림1> 장애인 1인당 예산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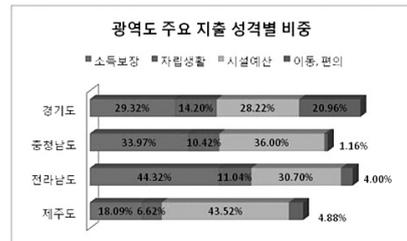


에서 시설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나 되었다. 다만, 소득보장의 경우 서울시(22.7%)나 대구시(24.8%)에 비해 부산시(34.4%)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광역시도 또한 장애인 시설 예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고,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그 비중이 43.5%나 된다. 다만, 전라남도의 경우 소득보장 예산(44.3%)이 시설 예산(30.7%)보다 높고, 경기도도 소득보장 예산 비중이 시설 예산 비중보다 약간 높다. 특히, 경기도는 이동편의 예산(21.0%) 비중이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경기도의 지역 특성상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도의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과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을 비교·분석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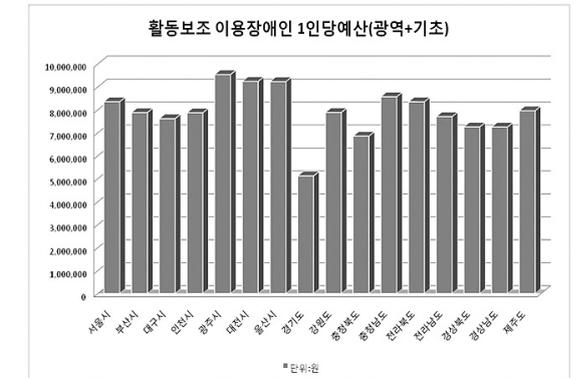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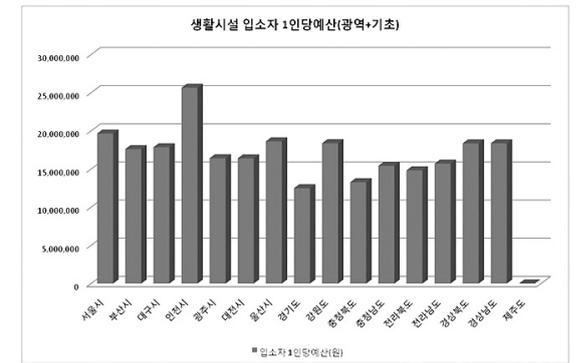
우선, 장애인생활시설운영사업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하고 생활시설 입소자 1인당 예산이 인천시가 약2500만원이었고, 그 다음으로 서울시가 약2000만원이었다. 반면, 경기도의 입소자 1인당 예산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전국의 1급 장애인 22만 명 가운데 12.7%만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활동보조 이용자 1인당 예산은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순으로 높고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순으로 낮았다. 특히, 경기도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서울시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총평과 제언

2010년 지자체 장애인 예산분석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예산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지방이양사업의 부담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 심각하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독창적인 사업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이런 조건에서 지자체들은 기존에 해왔던 시설 위주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예산의 기준과 범주를 정해 그 통계를 정확히 뽑아보고, 지자체 장애인 예산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장애인 정책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배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모범음식점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

- 서울시 영등포구·중구 소재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글. 박정연 / 센터 연구원

I. 조사 개요

1. 조사의 필요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이 법이 규정한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은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별표1)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가 되지 않는 일반음식점들 가운데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 중증 장애인들의 근린생활시설 아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선정하는 ‘모범음식점’에조차 중증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성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규정 개선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조사 목적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 단원들의 조사활동을 통해 지역 내 모범음식점에 대한 접근성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음식점에 대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소접근성 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관계 당국에 제안하고자 한다.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에 앞서 우선 서울시 중구와 영등포구를 사전

조사하여 조사 방법의 타당성과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조사 내용

- ① 조사 기간 : 2011년 3월~6월
- ② 조사 대상 : 서울 영등포구(237곳), 중구(230곳) 소재 모범음식점
- ③ 조사 방법
 - 서울시 영등포구, 중구 소재 모범음식점 현황 파악
 - ‘최소접근성 기준(안)’ 수립 및 모니터단원 교육
 - 영등포구, 중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조사협조 공문 발송
 - 우리 센터 담당자와 모니터단원 3명이 지역분할 방식으로 조사 업무 진행

4. 최소접근성 기준이란?

일반음식점에 대한 ‘최소접근성 기준’이란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정 규정에 미달하더라도 (중증) 장애인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접근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기준은 법정 개념이 아니라 우리 센터가 이번 조사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개념임을 밝혀 둔다.

우리 센터는 ①주출입구 접근 가능성 ②입식탁자 구비 ③ 화장실 이용 가능성을 최소접근성 기준으로 삼았다.

II. 조사 결과

1. 주출입구 접근 가능성

“출입불가능한 모범음식점, 영등포구 35%·중구 60%”

모범음식점의 ‘주출입구 형태’는 영등포구의 경우 전체 237곳 중 평면 129곳(54.4%), 계단 46곳(19.4%), 턱 37곳(15.6%), 경사로 25곳(10.5%) 순이었다. 중구는 전체 230곳 중 계단 101곳(43.9%), 평면 58곳(25.2%), 턱 44곳(19.1%), 경사로 27곳(11.7%) 순이었다.

〈표1〉 주출입구의 형태

구 분	영등포구		중구	
	빈도(곳)	비율(%)	빈도(곳)	비율(%)
평면	129	54.4	58	25.2
턱	37	15.6	44	19.1
계단	46	19.4	101	43.9
경사로	25	10.5	27	11.7
합 계	237	100.0	230	100.0

* '턱'이 2개 이상일 경우 '계단'으로 파악. 이하 동일.
 ** 본 조사에서 '장애인'의 기준은 '휠체어 사용자'를 기준으로 함. 이하 동일.

종합하면, 주출입구에 계단이나 턱이 있어서 중증 장애인들이 진입조차 할 수 없는 모범음식점이 영등포구에 83곳(35.0%), 중구에 145곳(60.0%)이 있다는 말이다.

2. 입식탁자 구비 유무

“입식탁자 없는 모범음식점, 영등포구 41.4%·중구 22.2%”

모범음식점의 '입식탁자 구비 유무'를 조사한 결과, 영등포구는 전체 237곳 중 139(58.6%)곳, 중구는 전체 230곳 중 179곳(77.8%)에 입식탁자가 갖추어져 있었다. 주출입구 접근성의 경우는 신시가지인 영등포구의 모범음식점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입식탁자 구비는 구시가지인 중구의 모범음식점들이 더 양호했다.

〈표2〉 입식탁자의 유무

구 분	영등포구		중구	
	빈도(곳)	비율(%)	빈도(곳)	비율(%)
있다	139	58.6	179	77.8
없다	98	41.4	51	22.2
합 계	237	100.0	230	100.0

입식탁자가 없는 모범음식점은 대부분 좌식-마루형태의 구조여서 주출입구 접근성이 보장된다하더라도 식당 내부에 또 다른 '장애물'이 있어 장애인의 음식점 이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3. 화장실의 이용 가능성

“화장실 이용 불가능한 음식점, 영등포구 31.2%·중구 50.4%”

모범음식점 화장실 이용가능성은 현행 편의증진법상 설치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휠체어 사용자'가 '최소한 이용 가능한' 환경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이때의 기준은 ①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의 확보 여부 ②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문의 턱과 폭 ③좌변기 설치 유무이다.

조사 결과, 영등포구의 경우 중증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갖춘 모범음식점이 전체 237곳 중 163곳(68.8%)이었다. 반면 중구의 경우는 전체 230곳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4곳(49.6%)에만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표3〉 화장실의 이용가능성

구 분	영등포구		중구	
	빈도(곳)	비율(%)	빈도(곳)	비율(%)
가능	163	68.8	114	49.6
불가능	74	31.2	116	50.4
합 계	237	100.0	230	100.0

이 같은 차이가 나는 까닭은 영등포구 음식점들이 자체 화장실을 잘 갖추었기 때문이라기보다 대형 빌딩에 입점한 음식점들이 많아서 편의시설을 갖춘 공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출입구 접근가능성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건축된 건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등포구의 모범음식점들의 화장실 이용 가능성이 다소 높았다.

4.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모범음식점 비율

“영등포구 모범음식점 10곳 중 약6곳 장애인 이용 불가!”

“중구 모범음식점 10곳 중 약8곳 장애인 이용 불가!”

앞서 제시한 음식점의 '최소 접근성 기준'은 ①주출입구의 형태가 '평면'이거나 '경사로'인 경우 ②입식탁자를 갖춘 경우 ③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등이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면 중증 장애인들은 사실상 음식점을 이용할 수가 없다.

실태조사를 통해 위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음식점을 파악해본 결과, 영등포구의 경우 전체 237곳 중 96곳(40.5%), 중구의 경우는 전체 230곳 중 53곳(23%)으로 나타났다.

〈표4〉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모범음식점

구 분	영등포구		중구	
	빈도(곳)	비율(%)	빈도(곳)	비율(%)
가능	96	40.5	53	23.0
불가능	141	59.5	177	77.0
합계	237	100.0	230	100.0

이를 종합하면, 영등포구 모범음식점 10곳 중 약6곳 그리고 중구 모범음식점 10곳 중 약8곳은 편의시설 미비로 장애인들이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모범음식점의 실정이 이렇다면, 일반 음식점의 장애인 접근성은 이 보다 훨씬 더 열악할 것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III. 결론 및 제언

이번 조사는 서울시 영등포구와 중구에 있는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우리 센터 담당 연구원과 3명의 장애인당사자 모니터단원이 약 두 달 동안 현지조사 방식으로 모니터링한 것이다. 그 결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모범음식점이 영등포구 59.5%, 중구 77.0%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근린생활시설 장애인 접근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위 두 지역만 놓고 비교할 때 영등포구의 모범음식점들이 중구의 모범음식점들보다 장애인 접근성이 다소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순 비교만으로 영등포구가 중구보다 장애인 접근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영등포구는 지역 특성상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대형 건물이 많아 이곳에 입점한 모범음식점의 접근성도 자연스럽게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결론삼아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음식점에 대한 현행 편의증진법상의 적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편의증진법이 적용되는 일반음식점은 ‘바닥면적의 합이 300㎡ 이상’인 곳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갖춘 일반음식점은 전국 421,856곳 중 60,672곳(14.4%)이 전부다.(통계청, 2009. 12. 기준/보건복지부, ‘200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39p) 전국의 일반음식점 가운데 약85%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선 바닥면적의 합이 200㎡ 이상인 음식점에도 편의증진법을 적용하고, 점차 바닥면적의 합이 100㎡ 이상인 음식점에까지 적용 범위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범음식점은 보건복지부 예규 제34호 「모범업소지정및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선정기준은 크게 ①위생(64점), ②서비스(23점), ③맛(7점), ④정부정책 실천 및 홍보 등 기여도(6점) 등이다. 이런 항목을 평가하여 총점 85점 이상이면 모범음식점에 선정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의무설치가 아니라 자율설치로 규정되어 있고, 그 점수도 가산점 3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주요 평가항목에 삽입하는 등 보건복지부 예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사회와 협의를 거쳐 모범음식점 ‘최소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범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될 경우 다른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접근성도 향상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편의증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모범음식점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장애인의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장애인들이 “맛있는 식당이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식당을 찾아 간다”는 자조 섞인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하루바삐 오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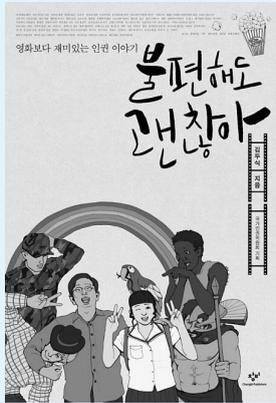


▲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한 서울시 중구의 한 모범음식점

「불편해도 괜찮아」를 읽고

— 정신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편견 —

글. 김효진 /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



김두식 지음 / 창비

‘인권’이란 단어는 무겁다. 아마도 ‘인권’이 군사독재 치하에서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정도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인권’을 떠올릴 때마다 무시무시한 국가폭력이 함께 연상되는 걸 어찌할 수 없는 세대이다. 그런데 ‘영화보다 재미있는 인권 이야기’ 라구?

저자 김두식 교수는 인권활동가이자 법학자이다. 그는 영화라는 매체를 매개로 인권을 이야기한다. 그가 말하는 인권 감수성의 출발점은 의외로 간단하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앵무새 죽이기』의 애틀커스 편치의 대사 중에서) 입장을 바꿔놓고만 생각해도 문제의 절반 이상은 해결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인권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로 요약한다. 하지만 어디 그것이 쉬운 일인가? 내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일 때는 당연히 인권이지만 남의 일일 땐 그리 간단치가 않다.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충을 거부하고 군대에 가지 않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불편하게 생각한다. 동성애자들이 등장하거나 동성애를 암시하는 정도의 영화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동성애자들이 육체적 사랑을 나누는 장면은 편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보통사람들의 현주소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특성은 인간 조건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토니 주트(〈터 나을 삶을 상상하라〉, 14쪽)의 말을 믿는다. 그래서인지 김두식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도 나는 그가 소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심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저자의 장애에 관한 통찰은 당사자의 감수성과 거의 맞먹을 정도여서 놀랍다. 그는 비장애인이면서도 장애인당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비극으로 보

고 그 희생자들을 환자로 규정하는 시각을 불편해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집중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모두 효율성이 높은 것도 아니며, 모두 순수하고 낙관적인 것도,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것도 아니”라며 장애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냄으로써 편견을 확산하는 것에 대해 우리와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다. 즉 ‘무기력한 불구자’나 ‘불굴의 인간승리자’에서 벗어나 정상화원칙과 가능성 패러다임에 기초해 영화를 다시 본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현실적인 소리가 자꾸 들리기 시작하면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208쪽)는 대목은 몹시 거슬린다. 저자 역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보통사람들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물론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병원에 입원시켜야만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병원에 감금되길 원치 않으며 지역사회에서 보통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길 원한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소수이지만 환청, 망상 등의 증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지역사회에 살면서 얼마든지 자기 삶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정신장애인들이 있다. 물론 증세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정신장애인도 있지만 단기간이면 죽한테도 불구하고 입원만을 능사로 여기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위협시키고 분리·배제하려는 비장애인 중심의 비틀어진 시각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면, 국내 정신장애인의 경우 신체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는 비자의적 입원율이 매우 높고 필요 이상으로 입원이 장기화되어 있으며, 퇴원 후 즉시 재입원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10월 상기 실태조사 결과와 정신장애인의 해당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담은 『정신장애인인권보호와증진을위한국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에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개정 및 정책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책자인 이 책에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대목이 들어있으니 옥의 티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불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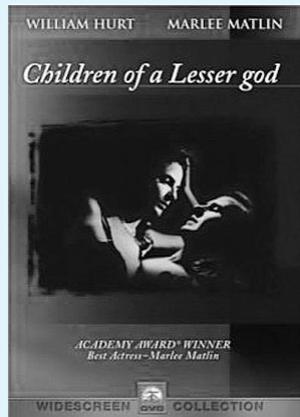
“법에선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눈으로 보라는 말이 있다. 의심스러울 때는 약자의 이익으로 보라”는 저자 김두식의 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약자인 정신장애인의 이익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한결 덜 불편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 이 글은 <DPI Magazine> 2011년 5월호에도 실려 있습니다.

작은 신의 아이들

- 타자와 평등한 소통은 어떻게 가능한가? -

글. 김익수 / 센터 연구원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리석은 자들은 확신에 차 있고,
아닌 사람들은 의문에 차 있기 때문이다”

- 버트란트 러셀

란다 헤인즈 감독의 영화 「작은 신의 아이들(Children of a Lesser God)」(1986년)은 윌리엄 허트와 말리 매틀린이 주연을 맡았다. 원작은 1980년 토니상을 받은 마크 메도프의 동명 연극이다.

농인학교 교사 제임스(윌리엄 허트)는 그 학교 졸업생이자 청소원으로 일하는 농인 처녀 사라(말리 매틀린)에게 관심을 갖는데, 사라의 냉담하기만 하다. 남자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어서다. 사라의 어릴 적 말을 배우려다 놀림감이 되자 남자들과 반항적인 성관계를 갖고 그들의 성적 노리개가 된다. 결국 제임스의 사랑으로 사라의 차츰 마음을 열게 되고 둘은 동거를 한다.

하지만 제임스가 말을 배우라고 채근하자 사라는 그의 곁을 떠나고, 그녀가 떠난 뒤에야 제임스는 언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다. 제임스는 사라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찾아가지만, 대학에 갈 학비를 벌기 위하여 미용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라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발걸음을 돌린다. 시간이 흘러 농인학교의 졸업식 날,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제임스 앞에 사라가 나타난다.

헤인즈 감독은 말없이 수화로 사랑을 표현하는 농인 소녀와 그녀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고 싶어 하는 한 남자를 통해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을 여성 특유의 감성으로 묘사하였다.

사라 역의 매틀린은 생후 18개월 때 청력을 잃고 독학으로 연극을 공부하여 8세 때 뮤지컬 무대에서 수화로 연기할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다. 영화 제작자들이 연극 「작은 신의 아이들」의 공연 테이프를 보고 단역으로 출연한 그녀를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했다. 그녀는 처음 출연한 영화에서 제인 폰다, 시고니 위버 등 쟁쟁한 배우들을 제치고 198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역대 최연소(21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영화에서 감독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농인에게 구화(口話)를 강권하는 것은 농인의 고유한 삶(즉, 문화)을 무시하는 것이다. 전화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미국의 대표적인 구화주의 농 교육자였다. 영화 속 제임스의 상징적 모델이 벨이라 할 수 있고, 이들의 태도는 비장애인들 일반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벨이 농인 아내에게 했던 것처럼 제임스도 사라에게서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정작 농인 당사자들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른다. 벨과 제임스는 러셀이 한탄한 ‘확신에 찬 어리석은 자’들의 표상이다.

수화는 인간이 구사할 수 있는 소통방식의 하나며 농인의 정체성과 고유성의 상징이다. 타자와 소통하고 소통을 통해 삶의 가치의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일진대, 제임스의 음성언어 요구는 사라에게는 억압이었을 뿐이다. 타인의 존재 조건과 방식을 존중할 때, 평등한 상호 관계가 가능할 것이다. 이 영화는 이른바 멜로물이지만, 사실은 농인과 청인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평적 소통과 타자 존중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할 것이다.



▲ 영화 「작은 신의 아이들」의 한 장면. 영화 속에서 말리 매틀린이 실제로 수화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인과 평등한 소통은 어떻게 가능한가? 사라가 떠나자 제임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영화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도 영화처럼 해피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나라 초중등 농학교 교사들 가운데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3%에 불과하다. 부모가 농인이 아닐 경우, 농 어린이들은 최초의 수화를 학교 선배한테서 배운다고 한다. 공교육 기관에서조차 농인들의 언어인 수화는 철저하게 비공식적이다. 오죽하면 농인들이 ‘수화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아우성이겠는가. 농인과 평등한 소통은 이들의 언어를 공식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작은 신의 아이들」처럼 우리 사회 농인들도 해피엔딩을 맞보았으면 한다.

장애 이슈

광주시의회, 장애인생활지원금 조례 전국 최초 제정

광주지역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4월22일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경제활동이 제한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된 내용으로는 '시장의 주된 책무로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토록 했으며, 지원금의 종류를 '장애인자립지원금'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지원금'으로 하여 시장은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 대상, 그리고 그 외의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생활수준과 장애정도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잇따른 '편의시설사전검사조례' 제정 및 개정

올해 들어 편의시설 사전검사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 안동시의회는 지난 2월24일 '장애인의편의시설사전검사에관한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 남구의회도 3월 15일 '장애인의편의시설설치및지도점검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건축물 시설주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관련 설치를 의무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지난 2월 '장애인등당사자에의한편의시설사전점검및설치·개선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전점검뿐만 아니라 도로법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사전점검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부산 사상구의회, 대전 중구 '장애인가정출산지원조례' 제정

부산시 사상구의회가 5월16일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면서 오는 7월부터 사상구 장애인 가정이 자녀를 출산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장애인인 경우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1~3급은 100만 원, 4~6급은 50만 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사상구에서는 장애 1~3급 가정에서 13명, 4~6

급 가정에서 38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이번 출산지원금조례는 부산, 경남에서는 처음 제정되었고, 특히 '장애여성'이 아닌 '장애가정'을 지원대상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장애인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13일에는 대전시 중구의회가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조례'를 제정하였다.

제주도의회,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 발의

제주도의회 윤두호 교육위원과 고충홍 의원은 공동으로 '제주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을 5월 25일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책 수립과 장애유형별 행·재정적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 관련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또 교육 및 홍보·실태조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및 관련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 '지적장애인 교육네트워크' 사업 추진

서울시 도봉구는 지난 4월22일 '장애인교육 네트워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적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기관들과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도봉구는 복지관 두 곳, 서비스교육 전문업체 큰나무아카데미, 커피체인 전문회사 (주) 로즈버드, 도봉구 제1호 마을기업 세움카페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적장애인의 자립을 돕게 된다. 자치구가 나서서 지적 장애인을 위해 네트워크를 만들고 한 주체로서 직접 참여한 예는 도봉구가 최초다.

또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지적 장애인 대상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교육은 이해가 쉬운 언어로 진행되며 각종 시청각자료가 활용된다.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인들이 일반인과의 경쟁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4월 1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원이용 프로그램의 일환인 숲속치유교실이 그 것.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주바라기해피홈 소속 지적 장애인들이 참여, 지역내 공원에서 다양한 생태체험도 하고 중랑천변에 농작물도 직접 가꾸어보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밖에도 도봉구는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실시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경상남도, 지적·자폐성 장애인 10명 '기간제'로 고용

경상남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10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해 행정업무를 보조하도록 한다고 5월3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

용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단에서 7월까지 도청 및 직속기관, 전 실과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를 탐색하기 위한 직무진단을 실시한다. 직무진단 결과 발달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배치할 부서를 결정한 뒤에 8월까지 15명을 모집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해당 부서에서 시험적으로 고용하게 된다. 이 기간에 발달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되며, 이들을 지도하는 '잡코치' 1명이 별도로 배치된다. 경상남도도 시험고용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10명의 장애인을 선발한다. 선발된 장애인들은 12월 중에 임용식을 한 뒤 내년 1월부터 도청직원으로 행정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인천교육청, 장애학생에 보조공학기구 무료 대여

인천시교육청은 5월부터 장애학생들에게 보조공학기구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구는 모두 819개 종이다. 농인 학생을 위한 FM보청기(460만원),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탁상용 독서확대기(300만원), 자세보정스탠드(460만원) 등 고가 기구부터 독서보조대(8만8천원), 소변경보기(11만원), 육조형 목조일자(6만3천원), 키보드 입력보조기(5만4천원)등 저렴한 기구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대여 기간은 2~3개월이지만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도 있다.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차현미씨 임명

- 복지부, "장애인 권리구제 등 소임 수행 적임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자로 개방형직위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차현미(49세)씨를 임명한다고 20일 밝혔다. 차 과장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박사출신으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를 시작으로 서울방이복지관 사무국장,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복지부는 임용에 대해 "오랫동안 장애인 현장에서 일해 왔고 공직자로서 정책수행 경험도 두루 갖추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 편의증진사업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복지증진에 관한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차 과정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정책이 지역에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체감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실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과 정부와의 경계선에서 소통하고, 교량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의 임기는 2년이다. <에이블뉴스 2011. 5. 20>

한국장애인방송 Jnettv는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의 미디어로서 지난 2008년 첫 송출을 시작한 장애인 전문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정보혁명과 통신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장애인의 정보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미디어는 정보통신 기술과 장애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사회의 무관심과 여전한 진입장벽 속에서 전국 450만 장애인들은 변변한 자신들의 미디어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입니다.

Jnettv는 우리 사회의 이런 척박한 토양에 도전장을 던지고,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의 미디어를 구축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장애인이 직접 제작하는 방송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협동하며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국을 목표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인.

그들과 함께하는 Jnettv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언제나 따끔한 질책으로 채찍질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 및 제보

Tel. 02-833-8414
Fax. 02-833-8414
jnettv@hanmail.net

www.jnettv.co.kr를 통해 시청후기를 남겨주세요!
한 달에 한번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